

## 감사보고서

학교법인 순효학원 이사장 귀하

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순효학원(신안산대학교)의 회계연도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및 2024년 2월 29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·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. 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.

우리의 의견으로는(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) 학교법인 순효학원(신안산대학교)의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은 적절하며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에 따라 학교법인 순효학원(신안산대학교)의 2024년 2월 29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.

(다음 : 지적사항 있으면 나열 또는 별첨함)

2024년 5월 21일

학교법인 순효학원

감사 이 용 기 이 용 기

(공인회계사 등록번호 제11126호)

감사 유 진 현 유진현

피감사자 (입회인)

학교법인 순효학원 사무국장 윤 준 한 윤준한

신안산대학교 사무처장 손 동 화 손동화

## 학교법인 순효학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계획

2023회계연도 2023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

감사결과 지적사항(내용)	피감사 기관장의 시정조치계획
<p><b>1. 법인 일반업무회계</b></p> <p><b>가. 교비회계 선급법인세 미전출</b> 2022회계연도 선급법인세가 법인세 납부금액에서 차감되어 교비로 미전출한 부분이 확인되었음. 법인에서는 교비로 미전출하는 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함.</p> <p><b>나.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부담 노력</b> 법인의 수익사업을 확대하여 신안산대학교에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등 전출금을 확대하여야 함.</p> <p><b>2. 교비회계</b></p> <p><b>가. 자산관리 미비</b> 별도의 자산관리규정을 통해 주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시행하여야 함에도, 시행이 안되고 있어 자산관리가 미비함.</p> <p><b>나. 적립금 적립계획 수립</b> 대학에 각종 소송으로 인한 학교에서 부담해야할 금액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대비할 수 있는 자금을 적립하는 등 적립금을 활용하여 차후 대학의 운영손실을 최소화하여야 함.</p>	<p><b>1. 법인 일반업무회계</b></p> <p><b>가. 선급법인세 미전출</b> 2022회계연도 선급법인세는 법인에서 신안산대학교로 별도로 전출 예정.</p> <p><b>나.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부담 노력</b> 법인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 승인을 받아 처리하고 있으나, 동두천 수익용재산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확대하고, 신안산대학교 전출금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고자 함.</p> <p><b>2. 교비회계</b></p> <p><b>가. 자산관리 미비</b> 자산관리 규정을 정비하여 정기적 재물조사를 시행하여 자산을 관리하고자 함.</p> <p><b>나. 적립금 운용계획 수립</b> 소송으로 인한 학교에서 부담해야할 부분을 파악하여 2024년에 반영할 예정이며, 차후 운영손실을 최소화하고자 적립금 운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자 함.</p>
피감사기관장	학교법인 순효학원 이사장 김 영 란 신 안 산 대 학 교 총 장 지 의 상

